

회계 및 조세뉴스

2020 년 8 월

월간베트남 비즈니스뉴스의 첫번째 기고에 즈음에 금번에는 최근 조세변경사항 및 베트남국세청 예규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0 년 법인세 30%감면 결의

2020 년 6 월 19 일자로 베트남국회는 한해 매출액 2,000 억동 미만의 회사들에 대한 2020 회계연도 법인세 30%감면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결의안은 2020 회계연도에 대해 결의일 후 45 일후부터 실행됩니다.

- 대상회사: 베트남 법인세법에 근거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회사 및 영리조직이며,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를 제외합니다. 외국법에 근거해 설립된 회사의 정의에 대해선 명확한 해석이 부존재하나, 베트남내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행위로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외국인계약자나 그에 의해 설립된 Project Management Office 는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걸로 해석됩니다. 법인세 감면대상기업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감면혜택을 적용하므로 종업원수에 상관없이 매출액 2,000 억 미만 기업은 감면혜택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손금불산입 조건 변경

2020 년 6 월 25 일자로 총리실은 현행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조건을 규정한 Decree 20/2017/ND-CP 를 변경한 Decree 68/2020/ND-CP (“Decree 68”)을 공표하였습니다. 과거 Decree 20 은 EBITDA(영업이익+감가/감모상각비+이자비용)의 2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모두 사외유출로 당기소멸하는 손금불산입비용으로 간주했습니다. 본사나 투자자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도 회사의 이자비용이 비용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자비용부담이 많은 초기설립 적자기업도 손금부인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어 금번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총리실은 해당 세법규정을 수정하는 Decree 68 이 수정 공표하였습니다. 바뀐 Decree 68 은 이자비용 손금한도액을 인상하고 손금불산입 비용은 향후 미래년도의 손금한도액의 여유내에서 5 년내에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년도에 미사용한 이자비용은 5 년내에 향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손금불산입(유보사항)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는 하기와 같습니다.

항목	Decree 20	Decree 68
이자비용항목	이자비용 전부	이자수익을 차감한 순이자비용
이자비용제외항목(항상 비용인정되는 이자비용)	N/A	ODA 이자비용, 국가정책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이자
손금산입 허용비율	EBITDA 의 20%	EBITDA 의 30%

손금불산입금액의 차년도 이월공제	불허용	향후 5 년내 이월해서 손금불산입액이 없는 향후년도에 손금으로 인정
2017 년과 2018 년 발생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변경내용 소급적용	불허용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이자비용 재계산 수정신고서 제출 조건부로, FY 2020 년을 포함해서 향후 5 년내 이월해서 손금불산입액이 없는 향후년도에 손금으로 인정

투자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매입부가세환급 불가

2020 년 4 월 1 일자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1393/TCT-KK 를 공표하고 투자허가서(IRC)에 따른 사업프로젝트의 진행이 지연된 경우엔 매입부가세공제를 부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자는 IRC 상 진행일정을 변경한 후에 매입부가세를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자금의 납입외에도 사업진행일정을 지연한 경우에 납세자의 매입부가세 환급신청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L/C 발행시 매출부가세 부과

2020 년 4 월 22 일자 베트남 국세청은 Official Letter no. 1606/TCT-DNLF 를 공표하고 L/C 발행을 지급대행서비스로 간주하고 매출부가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국세청입장을 뒤엎고 L/C 발행수수료 수령행위를 부가세면제항목인 금융서비스로 간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인적공제금액 변경

2020 년 6 월 2 일자로 국회는 Resolution 954/2020 / UBTVQH14 를 공표하고 근로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항목을 하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본인공제액:11 백만동/월;
- 부양가족공제:4.4 백만동/월

본 규정은 2020 년 7 월 1 일부터 적용되며, 2020 년 근로소득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2020 년도 근로소득세는 한해 전부에 대해 변경된 인적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 적용대상 확대

2020 년 3 월 31 일자 베트남국세청이 공표한 OFFICIAL LETTER NO. 1388/TCT-DNL 에 의하면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 고객사의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대행하는 서비스(결제대금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계약자는 외국인계약자세 납세의무자이며, 베트남소재 고객사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외국인계약자에게 대행서비스수수를 지급시에 5%를 법인세, 5%를 매출부가세를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본 OL 에 근거해서 E-

commerce 업계에서 활동하는 해외소재 IT 결재대행기관들은 베트남내에서 대행서비스 수수료 수령시 FCT 를 부담하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교육훈련기간동안의 근로세 납부방식 및 중복 근로소득자의 근로세 납부신고

2020년 3월 25일자로 하노이세무서가 공표한 Official Letter no. 14151/CT-TTHT 에 의하면 직무교육계약시 피교육자에 대한 근로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기간동안 회사가 피교육자와 3개월이상의 고용기간을 지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회사는 피교육자의 근로세를 누진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후 납부합니다.
- 교육훈련기간동안 회사가 피교육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2백만동 이상이면, 급여총액에 10% 근로세 단일세율 원천징수합니다. 단, 2백만동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됩니다.
- 2 개 이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복소득자이면,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각각의 고용주가 월별/분기별 예납한후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개인명으로 자체 신고해야 합니다. 각 고용주는 해당년도의 고용주별 근로세납부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요청받을 시 매년 발행해야 합니다.